

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7월 14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균

국 무 위 원 박 능 후

보건복지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30846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6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별표 3 제1호라목1)을 삭제하고, 같은 목 2) 및 3)을 각각 1) 및 2)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신고하지 않거나”를 “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”으로, “신고한”을 “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5항”을 “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7월 14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균

국 무 위 원 조 명 래

환경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30847호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)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」(이하 “스톡홀름협약”이라 한다) 부속서 에이(A)부터 씨(C)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
2. 「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」(이하 “미나마타협약”이라 한다)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

제18조제2항 중 “「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」(이하 “미나마타협약”이라 한다)”을 “미나마타협약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, “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」(이하 “스톡홀름협약”이라 한다)”을 “스톡홀름협약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2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다. 잔류성오염물질을 함유한 폐농약

별표 5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별표 5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·운반·보관하거나 처리한 경우	법 제37조제1항제3호			
1)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		500	700	1,000
2)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		100	200	300

3) 별표 2 제1호나목의 폐기물 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	500	700	1,000
4) 별표 2 제2호의 폐기물을 법 제22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·운반·보관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	500	700	1,000

부 칙

이 영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(A)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19년 5월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」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,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등 총 175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속서 에이(A)를 채택함에 따라,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」 부속서 에이(A)부터 씨(C)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과 「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」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정하는 한편,

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 재 인 ㉠

2020년 7월 14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환경부장관 조명래

●대통령령 제30848호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의4(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)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.